

특별기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Ⅱ)

김 용 균^①

^① 소방방재청 수습대책과 사무관

〈본 특별기는 3회 연재 중 2회 분임〉

II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① 법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1. 기본이념

21세기형 선진 국가재난관리 체제구축 및 국민의 생
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실현을 통
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기본틀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난예방, 응급대책, 긴급구조, 재난복구 등에 대한 운영체계 통합, 일원화
- 민관협력을 통한 국민참여형 종합 재난관리체제로의 발전
- 재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와 예방우선 정책으로의 전환

2. 기본방향

- 재해, 재난 관련법 통합 및 안전관련 타 법령과의 유
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한 명실상부한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화립
- 이원화된 전통적 재난개념의 통합과 국가 기반체계
마비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포함하여 확대 일원화
된 재난개념의 정립
- 국가재난관리정책, 정책심의기구, 재난대책기구 등
재난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
책, 기구, 조직의 통합,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현장지휘 체계화립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법적 지위부여
- 안전제일 가치관의 사회 저변확대와 과학기술의 진
흥, 관련산업 육성 등 전문화된 재난관리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②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률 주요내용

1. 안전관리 전문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의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스안전 공사 등 개별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산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33)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소속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안전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등 유기적 연계를 위함

○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요구만 할 뿐

- 지도, 감독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두어 이중 감독에 의한 부담 및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종래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계획 등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분야로 이원화되어 수립, 시행되어 온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을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통합, 일원화함(§22~25)

○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관련부처가 추진할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재난관리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임

3. 재난예방 조치

사전예방 및 대비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각급 시설관리기관의 관리대상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정비,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시설,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 안전점검방법 등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토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함(§26)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지정, 관리, 정비하는 등

-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발생을 억제토록 함

○ 그 외에도 도로, 철도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고층화, 대형화되는 건축물,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 위험 업종을 비롯

- 유독물질 등 특정물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의 표준화, 점검방법의 적정성 검토, 사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상시관리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함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확보, 기관간의 협조,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관리 규정의 정비, 보완에 대한 업무를 의무화함

4.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방식 개선

종래의 재난관리법, 시특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개별 부처에서 시행해오던 안전점검 업무를 소방방재청장도 병행 점검토록 하여 객관성을 유지토록 함(§30)

○ 안전점검은 그 대상에 따라 점검방법이나 시기 등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나

특별기사

- 재난발생이 위협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개선함

○ 개별법에 의한 각종 안전점검과의 중복을 피하고 점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소방방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당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협이 높은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 정밀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권한을 소방방재청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함

5. 재난사태 선포

태풍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의 규모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함(§36)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의 응급조치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등
-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사전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

○ 재난사태 선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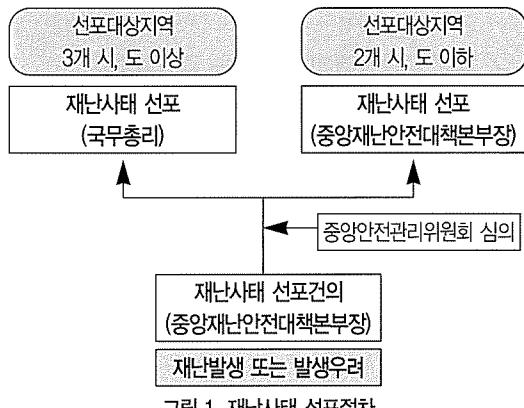


그림 1. 재난사태 선포절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 재난사태 선포를 해제함

6. 피해경감을 위한 인력, 장비의 동원

재난 응급대책을 통한 재난의 확대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평상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물자, 자재 비축 및 동원장비와 인력을 지정 관리하고 경보의 발령 또는 피난의 권고로 재난을 사전대비토록 하고,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와 군부대 및 지정된 민간의 장비,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35, §37, §39)

○ 각종 재난발생시 가스, 전기, 상, 하수도,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통신 등 공공시설의 붕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응급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를 사전에 확보, 비축하고 소요장비를 지정,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동원체계를 확립함

○ 재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보의 발령 또는 피난의 지시를 통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고

- 재난발생시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급수 및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통한 인명 및 재난

피해를 최소로 경감토록 함

- 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해서는
 - 민간 및 기술, 행정 전문인력과 필요물자, 지정장비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므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시 민방위 대원 등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7. 재난관리기금의 통합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 대책법상의 재해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67)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의 타 용도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 재난예방과 복구라는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 토록 함

- 종전의 “재해대책기금(보통세의 8/1000)”과 “재난관리기금(보통세의 2/1000)”이 「재난관리기금(보통세의 1/100)」으로 통합됨

8. 주민 자율방재 체제의 구축, 운영

주민자율 방재역량 강화 및 민관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참여형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안전문화 운동전개, 민간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 및 민간 자율 방재 조직에 대한 육성, 지원책을 마련함(§70, §75)

-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지원방안 을 마련, 실천하여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 안전 사고의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 과거 정부주도형 방재체제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방재체제 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지원 등 민간주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체제를 강화함

-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 안전조치대책, 현장점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

9.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안전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책을 마련함(§72)

- 정부가 안전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 안전기술 개발기반을 확대하고 안전기술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안전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함

- 국가안전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 사회 전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감시기능과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참여를 통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 안전관련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 예방적 성격의 투자

특집기사

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안전관련 산업자체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

10. 재난관련 보험 및 공제의 개발, 보급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를 개발, 보급할 수 있고 국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76)

○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개인의 과실,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의 경우
- 개인의 보상, 수습, 복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평상시 보험금을 적립도록 제도화
○ 개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난이나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도
-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재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지급, 수습, 복구비용 지원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고
○ 같은 재난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소규모 재난 등에 대해서는
- 정부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으로 볼 때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므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선진형 재난대비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IV. 자연재해대책법

① 법의 기본이념 및 개정배경

1. 기본이념

○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

시설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존하고자 함

2. 개정배경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04. 6. 1)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중 방재계획,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모든 재난에 공통적인 사항은 기본법에 포함

○ 자연재난의 예방, 복구 체계는 인적, 사회적 재난과 다르고 기본법에서 다룰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기본법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기본법 제8조)

○ 또한, 최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재해취약요인 증가 및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이므로 재해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 근원적 재해예방,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복구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혁신제도들을 대폭 도입하여 현행『자연재해대책법』을 전문 개정함

② 법률개정 추진경위

○ '04. 5. 10 : 서울대, 연세대학교 등 11개 대학부설 방재연구센터소장 간담회 개최

○ '04. 7. 2 : 대학부설 방재연구센터 소장들의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 건의로 심재덕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04. 7. 9 ~ 9.16 : 관계부처 의견 수렴

○ '04. 9. 8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 '04. 10. 1 : 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04. 12. 8 : 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 '04. 12. 23 : 개정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04.12.29 :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5. 1.13 : 차관회의 심의 의결
- '05. 1.18 : 국무회의 심의 의결
- '05. 1.27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공포
(법률제7359호)

③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구성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조문 구성

○ 총 7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조문 수용 : 17개

- 신 설 조 문 : 62개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9장 63개 조문으로 구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 : 42개

-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에 포함 : 17개

- 폐 지 : 4개

〈현행법과 개정안 구성 대비〉

표 1 참조

④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주요내용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입배경

○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계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등에 의해 11조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

○ 특히 피해원인 중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재해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피해를 기종

※ 시도, 시군구에서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인허가시 농지, 산림, 상하수도, 주택부서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 개별법규에

표 1. 현행법과 개정안 구성 대비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기본법 포 함	개정안 포 함	폐지	구 分	계	현행법 조문유지	신설	
합 계	63	42	17	4	합 계	79	17	62	
1장 총칙	4	2	2	—	1장 총칙	3	2	1	
2장 방재조직	9	6	—	3	2장 재해예방 및 대비	30	5	25	
3장 방재계획	8	7	—	1	1절 재해경감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12	2	10	
4장 재해예방	6	4	2	—	2절 풍수해	7	0	7	
5장 지진방재대책	3	—	3	—	3절 지진	3	3	0	
6장 재해응급대책	14	14	—	—	4절 설해	3	0	3	
					5절 가뭄	5	0	5	
					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12	0	12	
7장 재해복구	6	2	4	—	4장 재해복구	12	4	8	
					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6	0	6	
8장 보조	9	4	5	—	6장 보조	13	5	8	
9장 별칙	4	3	1	—	7장 별칙	3	1	2	

특별기사

따라 법적 의무로서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방재부 서의 검토의견은 법적규정 미비로 의견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30만m²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 24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국토계획, 도시계획, 도로계획, 해안매립계획 등 주요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사전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 30만m² 미만의 24개 개발사업과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당초부터 제외되어 왔던 도로, 철도 등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재해영향의 사전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 상습침수, 해일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파주 문산, 금촌지구, 삼척 남양지구, 마산, 여수 매립지 등도 개발단계에서 방재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가 반복되는 결과 초래

□ 외국사례 및 국내 유사법률

○ 일본 동경도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수립 초기부터 재해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에 방재계획과 가 속해 있음

○ 국내 유사제도로서 계획, 사업을 확정, 허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가 있음

※총리 훈령으로 제정('98.1)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반영('00.8)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

그림 2 참조

□ 검토협의 절차

〈일반적 절차〉

- ① 계획(안)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 ② 영향성 검토의뢰 및 의견수렴

1. 행정계획단계

«검토대상»

-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 각종 개발관련 행정계획

※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 개발사업단계

재해영향평가대상

30만m² 이상
(6개분야 24개사업)

-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9)
- 산업단지의 조성사업(6)
- 관광단지개발(5)
- 묘지 등 산지개발(2)
- 골프장 등 체육시설(1)
- 유수지 매립(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재해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계획단계협의)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외 대규모사업
- 댐, 저수지 개발사업
- 철도, 도로 개발사업
- 항만, 공항 개발사업
- 하천, 소하천정비 개발사업
- 전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 임도 등 산간지역 개발사업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 30만m² 미만 기타 개발사업

그림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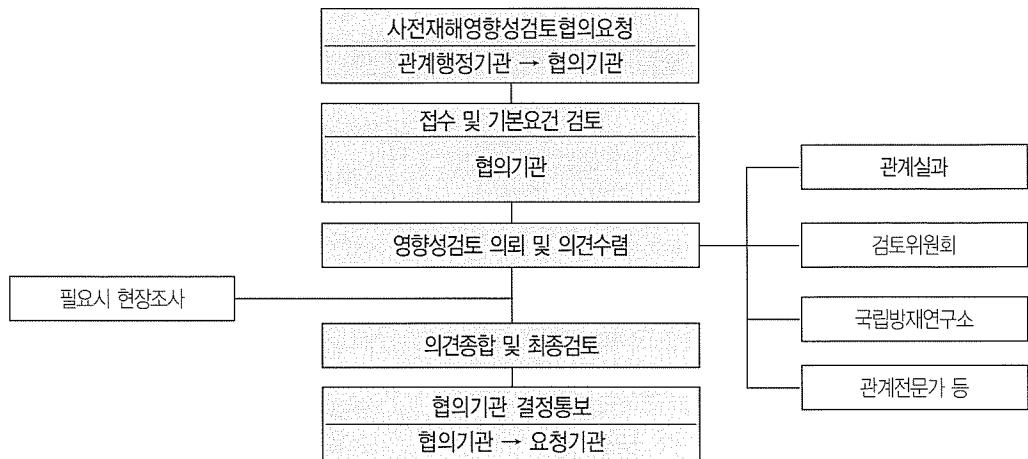


그림 3. 협의절차 흐름도

- ③ 의견 종합 및 검토
- ④ 협의의견 결정, 통보

〈협의절차 흐름도〉

그림 3 참조

2. 방재분야 전문가 참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의 심의위원회에 방재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해영향성에 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안 제8조)

□ 도입 배경

○ 국토정책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부위원회
를 제외한 각종 개발관련 위원회가 관련분야의 전문
가로만 구성되고 방재분야전문가의 참여기회가 많지
않아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검
토 및 대처가 미흡함

□ 법안 주요내용

○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재해요인예측,
재해저감대책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
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의
한 각종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등 사항을 심
의, 의결,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에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
으로 참여시키고

-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회별로
적합한 방재분야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함

□ 기대효과

○ 개발관련 심의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의 참여로 재
해영향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각종 계획에 방재개념
도입으로 개발로 인한 재해발생 최소화 도모

〈각종 개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현황〉

가. 중앙

표 2 참조

나. 시, 도

표 3 참조

특별기사

표 2. 각종 개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현황(중앙)

관련법	항 목	수 립	심 의	심의위원회 규정 조항
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정책위원회 • 국무회의	• 제26조
	•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토정책위원회	• 제2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광역도시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6조
	• 도시관리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시, 도건축위원회)	• 제106조 • 제113조(건축법 제4조)
	• 기반시설부담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6조
	• 허가구역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무회의	• 제21조
	• 수도권정비계획 추진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 수도권정비위원회	• 제21조
	• 대규모개발사업	• 관계행정기관의 장	• 수도권정비위원회	• 제21조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건설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무회의	• 제21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 광역개발사업계획	• 시, 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제26조
	• 특정지역개발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시,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제26조
	• 민자유치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국토정책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 도 및 시, 군, 구의 경우)	• 국토기본법 제2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
	• 광역개발권역	• 건설교통부장관 • 시,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제26조
	• 특정지역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제26조
	• 개발촉진지구	• 건설교통부장관 • 광역시장,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제26조
	• 택지개발촉진법	• 건설교통부장관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산업입지개발지침	• 건설교통부장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제3조
	• 국가산업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집적정책심의회	• 제5조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	• 관리권자	• 산업집적정책심의회	• 제5조
	• 유치지역	•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집적정책심의회	• 제5조

표 2. 각종 개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현황(중앙)(계속)

관련법	항 목	수 립	심 의	심의위원회 규정 조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	• 자유무역지역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자유무역지역위원회	• 제36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물류정책위원회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
	• 유통단지관리지침	• 건설교통부장관	• 물류정책위원회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
	• 유통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 물류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물류정책위원회	•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
	• 예정지역	• 건설교통부장관	•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
항만법	• 항만배후단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 제4조
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해양수산부장관	•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신공항건설기본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 건설교통부장관	•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제32조
	• 교통권역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제32조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법률	• 댐건설예정지역	• 건설교통부장관과 또는 시, 도지사	• 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하천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 하천유역종합지수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 하천정비기본계획	• 관리청	• 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 하천구역	• 관리청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 하천예정지	• 관리청	• 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 연안구역	• 관리청	• 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60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통상산업부장관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제4조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 국립공원위원회	• 제9조
	• 국립공원계획	• 환경부장관	• 국립공원위원회	• 제9조
	• 국립공원	• 환경부장관	• 국립공원위원회 • 국토정책위원회	• 제9조 • 국토기본법 제26조
	• 공원보호구역	• 공원관리청	• 공원위원회	• 제9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장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제4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 사업시행자	•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	• 제6조의2
	• 공공철도사업예정지역	• 건설교통부장관	•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	• 제6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 국가물류기본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물류정책위원회	• 제4조의6

특별기사

표 3. 각종 개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현황(시, 도)

관련법	항 목	수 립	심 의	심의위원회 규정 조항
국토기본법	• 도종합계획	•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 제26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기본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6조
	• 개발행위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06조
	• 개발밀도관리구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13조
	• 기반시설부담구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1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국가지원사업계획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제26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 폐광지역진흥지구	• 도지사	• 국무회의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시, 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13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06조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06조, 제113조
	• 도시개발구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06조, 제113조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 시, 도지사	• 시, 도농정심의회	•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 도지사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제3조
자연공원법	• 도립공원계획	• 시, 도지사	• 도립공원위원회	• 제9조
	• 도립공원	• 시, 도지사	• 도립공원위원회	• 제9조
	• 공원보호구역	• 공원관리청	• 공원위원회	• 제9조
도서개발촉진법	• 사업계획	• 시, 도지사	• 도서개발심의위원회	• 제14조
	• 연도별 사업계획	• 시, 도지사	• 도서개발심의위원회	• 제14조
	• 개발대상도서	• 시, 도지사	• 도서개발심의위원회	• 제14조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기본계획	• 시, 도지사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
화물유통촉진법	• 도시물류기본계획	• 특별, 광역시장	• 지방물류정책위원회	• 제4조의6

다음호 연재